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 343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5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 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개정
 - ‘결손처분’을 일정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내부행정절차인 ‘정리보류’와 징수권 소멸로 인한 ‘시효완성정리’로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 ‘결손처리’를 ‘시효완성정리’로 용어 변경 (§13)
- 결손처분 관련 서식 이름 변경 및 시효완성정리 관련 조문 신설 (§14)
-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용어 변경 (§14~§16)
- 시행규칙 관련 별지 서식 전부 추가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세무1과장, 전화: 02-3396-5105, FAX: 02-3396-8699, E-mail: lyh05@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결손처리” 를 “시효완성정리” 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결손처분)” 을 “(정리보류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06조에 따른 결손처분은” 을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정리보류는” 으로, “결손결정결의서” 를 “정리보류결정결의서” 로, “결손처분표” 를 “정리보류표” 로 한다.

제1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시효완성정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효완성정리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병)의 시효완성정리표에 따른다.

제15조의 제목 중 “결손처분” 을 “정리보류”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 을 “정리보류를” 로, “결손처분 취소액” 을 “정리보류 취소액” 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 한”을 “정리보류를 한”으로, “결손처분
을 취소”를 “정리보류를 취소”로 한다.

별지 제1호~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지]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border-left: 2px solid black; border-right: 2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input type="checkbox"/> 부과 <input type="checkbox"/> 신고납부 <input type="checkbox"/> 감액 <input type="checkbox"/> 정리보류 <input type="checkbox"/> 시효완성정리 </div> <div style="margin-left: 20px; font-size: 24px; font-weight: bold;">]</div> <div style="margin-left: 20px;"> 결정결의서 </div> </div>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고지서발부		년 월 일 (인)			
팀장	납액통지 제호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연도		년도 세입		
		결정내용	본세	가산금	계	
	항	세액				
		가산세				
목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W)					
납세인원	시 구 외 명 번길					
적요	년도 월 분 세			수납부 등재	(인)	
				환급금 정리	(인)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 로 표시)로 기재						

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과세물건				전화번호									
상호				성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영업장소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세목	연도	납기	과세번호	독촉		체납액						합계	
				발부일	납부기한	1차	2차	3차	4차	5차	-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					체납자 주소지 약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100px; width: 100%;"></div>								

(뒤 쪽)

체납정리보고			처리전망	조사자
담당자	팀장	과장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p style="text-align: center;">주거 확인</p>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소속 직급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재산 확인</p>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소속 직급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생활상태 확인</p> 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 기타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소속 직급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재조사 확인</p> 위 사실을 재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함.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소속 직급 성명</p>	

210mm×297mm(백상지 80g/㎡)

정 리 보 류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체납자	주소				상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과세번호	연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인)	
					확인자	(과 장)	:	(인)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뒤 쪽)

정 리 보 류 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 년 월 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된 지방세(정리보류액 포함)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개내역 중 총 체납액은 년 월까지 증가산금을 가산한 체납액이, 세목 및 납부기한은 2건 이상을 체납한 경우 건별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및 납부기한이, 체납자의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인 경우 현재의 직업(업종)이, 폐업자는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이 기재되었습니다.
- 본 체납액에 관한 납부상담 또는 문의는 서울특별시 중구 세무2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명세

1. 개인 공개 대상자

년 공개대상자 명단(개인)

(단위 : 백만원)

번호	성명	연령	상호	직업 (업종)	주소	총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체납요지

2. 법인 공개 대상자

년 공개대상자 명단(법인)

(단위 : 백만원)

번호	법인명	대표자	업종	법인소재지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체납요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구세 체납액의 이월) ① (생 략)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세 체납액은 <u>결손처리</u>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p> <p>제14조(<u>결손처분</u>) 법 제106조에 따른 <u>결손처분</u>은 별지 제1호서식의 <u>결손결정결의서</u> 및 별지 제9호서식의 <u>결손처분표</u>(갑, 을)에 따른다. <u>< 신 설 ></u></p> <p>제15조(지난 회계연도 <u>결손처분</u>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u>결손처분</u>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u>결손처분 취소액</u>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p> <p>제16조(<u>결손처분의 사후관리</u>) <u>결손처분</u>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u>결손처분을 취소</u>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p>	<p>제13조(구세 체납액의 이월) ① (현행과 같음) ② ----- <u>시효완성정리</u>----- -----. ③ (현행과 같음)</p> <p>제14조(<u>정리보류 등</u>) ①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u>정리보류</u>는 ----- <u>정리보류결정결의서</u> ----- <u>정리보류표</u>-----. ②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u>시효완성정리</u>는 <u>별지 제1호서식의 시효완성정리결정결의서</u> 및 <u>별지 제9호서식(병)의 시효완성정리표</u>에 따른다.</p> <p>제15조(지난 회계연도 <u>정리보류</u> 취소 시 이월액 정리) ----- <u>정리보류를</u> ----- ----- <u>정리보류 취소액</u>----- ----- -----.</p> <p>제16조(<u>정리보류의 사후관리</u>) <u>정리보류</u>를 한 ----- ----- ----- <u>정리보류를 취소</u>----- -----.</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